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언론사에 대한 평가나 논평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4가합72896)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사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양정철 청와대 국내언론담당 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도이전계획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대비와 검토라는 실질적이고 정책평가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를 많이 게재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양정철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수도이전 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가 종전에는 비판은 하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긍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왜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균형성을 상실하고 비판 일변도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

면서,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양정철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 다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修辭)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 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 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 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 양정철 등이 청와대 홈페이지(www. president.go.kr) 내 ‘청와대 브리핑’에 2004년 7월 9일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 제하 의 기사와 2004년 7월 14일 『‘당보(黨報)’인지 ‘신문’ 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 동아에 답한다』라는 제 목, ‘동아여, 자기 기록마저 왜곡하는가’, ‘표변의 진 수’, ‘확인하고 싶거든 눈을 들어 동아를 보라’ 등의 소제목의 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원고 의 기사를 논평하면서 원고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 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정 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 ‘저주의 굿판’, ‘입장 을 수시로 바뀌가며 줄타기’, ‘낯부끄러울 정도의 적 극적 지지입장’, ‘표변의 진수’, ‘한나라당의 구렁에 맞춘 청기·백기 게임’ 등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한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72896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이 병 삼
피 고 : 1. 김 우 식
2. 이 병 완

3. 양 정 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전 태 구

변 론 종 결 : 2005. 7. 8.

판 결 선 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호증의 1, 2, 강제2호증의 1, 2, 강제6호증의 1, 3, 강제9 호증(가지번호 포함), 강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0, 을제5호증의 4, 을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 론사이며, 피고 김우식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수 석비서관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자, 피고 이병완은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휴일을 제외하고 청 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매일 게재되 는 ‘청와대브리핑’의 총괄책임자, 피고 양정철은 홍 보수석 휘하의 국내언론담당비서관으로서 2004. 7.경 별지 1, 2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위 ‘청와 대브리핑’ 란에 게재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된 당시에는 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추진으로 각계 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던 상황이었는 데, 특히 원고는 기사나 사설 등을 통하여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하여 비용의 과다, 외국의 사례,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 양정철은 2004. 7. 9. ‘청와대브리핑’ 기사의 하나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집어치워라』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과거에 동아일보를 통하여 실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보도한 내용을 분석한 다음, ‘균형성 포기…비판일변도…1977년 이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적극 지지, 반대, 암묵적 동의, 적극 반대 입장을 수시로 바뀌가며 줄타기를 해온 것…행정수도 건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에 역대 정권이 늘상 거론하던 해묵은 과제였다…김영삼·이회창 후보에겐 들이대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만의 검증이 뒤늦게 시작됐다…똑같은 대선공약인데 누가 하면 찬성하거나 침묵하고 누가 하면 반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별지1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라. 피고 양정철의 별지1의 기사가 게재된 이후 원고는 2004. 7. 10.자 동아일보 A4면에 「청와대 ‘동아—조선은 저주의 굿판 걷어치워라’ 수도이전반대 확산—輿지지울 하락, ‘언론과 전쟁’으로 국면전환 노리나」라는 소제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왔고 이에 의도적으로 원고를 표적삼아 별지1의 기사를 피고들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그 바로 옆에 「청와대 주장과 本報 ‘수도이전’ 보도내용 비교」라는 소제목으로 원고의 1977년도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태도와 2004년도의 보도태도에 관하여 스스로 비교·분석하면서 피고들의 별지1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나아가 2004. 7. 12.자 동아일보 A2면 사설란에 『盧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피고들의 별지1 기사를 ‘특정신문 때리기’로 규정하면서 ‘노정권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집단에 더는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는 불구화(不具化)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취지의 비평 기사를, A6면 「기자의 눈」란에 『‘청와대 브리핑’의 선동적 독설』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사를 ‘정부기관 매체의 선동적인 독설’, ‘논리의 비약, 반지성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는 등의 반박기사를 게재하였고, 다시 2004. 7. 13.자 동아일보 A5면에 『靑 ‘저주의 굿판’ 주장 사실왜곡, 本報 1977년 보도내용—朴正熙 ‘백지계획’ 때도 수도이전 조목조목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별지1 기사 내용에 대한 각 항목별 반박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이에 피고 양정철은 다시 2004. 7. 14.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브리핑’란에 『“黨報”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동아에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동아여, 자기 기록마저 왜곡하는가’, ‘豹變의 眞髓 - 확인하고 싶거든 눈을 들어 동아를 보라’ 등의 소제목 하에 행정수도 건설, 국민적 의견수렴, 대통령 결정, 서울과밀, 서울의 미래, 외국사례, 충청권 반응 등의 항목별로 동아일보의 1977년도 보도태도와 2004년도의 보도태도를 그 기사문언을 따와서 비교하여 양 시점의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치부를 둘러싼 검증은 부당한 전쟁이고, 자신들이 벌이는 편파적인 공격과 시비는 언론자유라는 논리는 오만이고 독선일 뿐이다…구여권 혹은 한나라당이 찬성할 때엔 동조하거나 침묵하면서 유

독 참여정부가 같은 사안을 추진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특정정당의 당보(黨報)라는 오해를 계속 살 것인지, 정도를 걷는 신문인지 입장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반박하는 별지2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바. 원고는 2004. 7. 16.자 동아일보에서 『청와대브리핑—과거수도이전 공약 땀 침묵의 허구—兩金은 '일부기관 이전' 공약 '사실상 천도'와 비교는 억지』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없었다...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내용이 다른 만큼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신문기사도 박-노 대통령의 행정수도에 대한 기사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김영삼 후보의 일부 외청 이전과 사실상 천도 개념인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은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별지1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재차 게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보도내용의 실제 취지와 다르게 오인되도록 유도하거나 보도내용의 취지를 왜곡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또한 정당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균형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보도태도를 비평한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그 표현의 정도 역시 공적인 존재인 원고가 수인할 한도 내의 비평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비평의 기초가 되는 1977년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와 2004년 현재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을 왜곡한 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이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하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에 족하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그 기초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의견 또는 논평의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부분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 사실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언론기관이 국가권력이나 사회제 세력에 대해 비판자의 역할을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언론기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 언론기관 자체가 비판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이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고 언론기관 스스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것이고, 그 비판이 그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그것이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쉽사리 법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비평에 있어 최대한의 비평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개개의 언론기관이 공급하는 다양한 의견을 그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성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 8, 9, 10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2.경 기획성 기사 ‘새서울 예진’을 7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게재하면서 수도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수도가 이전된 이후에도 서울은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고(首位都市機能은 不變), 그러나 수도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울의 교통지옥은 면하기 어려우며 중앙권력과의 거리감 때문에 범죄증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강원 영동·춘천 지역 주민들은 수도이전계획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표출하였으나 충청권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위 기획성 기사의 마지막회에 수도이전에 따른 여러 장·단점 및 부작용을 종합·정리하면서도 결국에는 ‘施行錯誤있어선 안 될 百年大計’로서 ‘民心低流 깊이 把握을’이라는 당부성 문구로 위 시리즈를 마무리하였던 사실, 또 하나의 기획성 기사인 ‘인공수도 브라질리아’ 시리즈에서는 ‘건설 3년의 대역사’, ‘구상에서 착공까지, 오랜 찬반논쟁...쿠비체크가 이전결단’, ‘인플레·경제파탄 들어 거센 반발’ 등의 기사에 이어 ‘황무지에선 기적—천도 후도 한동안 수도 기능 못해, 수도권 투자로 92%의 물가상승’, ‘그러나 결국 새로운 수

도건설은 리오와 사울루루 중심의 경제권에서 탈피, 지방과의 격차를 줄였고 아마존 횡단도로를 건설, 이 지역 일대 개발에 박차를 가해 목축, 쌀, 콩의 생산을 증대시켰다’는 기사로 시리즈를 마무리하였던 사실, ‘행정수도—전문가들의 좌담회(1977. 2. 12.)’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새행정수도건설 구상발표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줘, 국민들의 호기심·궁금증을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좌담을 게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면에서 ‘투자재원, 시설이동 서울의 공소화 등 난제—천문학적인 재원마련문제, 관련 공무원의 집단이동문제, 기존 서울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마스터플랜만 작성되면 건설은 3년 안에(1977. 2. 12.)’라는 등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평가를 제시하였던 사실, 반면 2003년, 2004년경 원고의 사설 제목이나 기사의 소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행정수도 개발 밑그림 정부부담 11조...당초예산액 2배로(2003. 11. 17.)’, ‘서울 50만명 줄이려 수도이전 45조 쓰나 원로학자 74명 반대 서명(2003. 11. 20.)’ 등 구체적인 정책비판 영역에서는 비용부담의 증가가 주로 강조되었고, 기타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 원점서 재검토(2003. 11. 1.)’, ‘천도,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2004. 6. 12.)’, ‘수도이전,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라(2004. 6. 19.)’, ‘수도이전, 국회열고 재론하라(2004. 6. 22.)’, ‘노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2004. 7. 12.)’, ‘수도 이전하자고 아무 말이나 하나(2004. 8. 6.)’, ‘참여정부, 여론 뱉고 수도이전 할 건가(2004. 8. 12.)’ 등 수도이전계획 자체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의 대비와 검토라는 실질적이고 정책평가적인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양정철이 작성하여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동아일보의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보도태도가 종전에는 비판은 하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및 당위성도 긍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반면,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왜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균형을 상실하고 비판 일변도의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언론사로서의 원고의 보도태도를 분석·비판하고자 함이 그 주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 양정철의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평가, 논평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표현에 있어 ‘저주의 굿판’, ‘입장을 수시로 바꿔가며 줄타기’, ‘낮부끄러울 정도의 적극적 지지입장’, ‘표변의 진수’, ‘한나라당의 구렁에 맞춘 청기·백기 게임’ 등 다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존재인 원고에 대한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사(修辭)적인 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그러한 논평의 전제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보도 태도에 대한 입장변화를 지적하는데 있어 세부(細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

가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적인 의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양정철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한 행위는 그 일부 표현방법이 국정의 최고기관에서 공표하는 자료에 사용하기에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언론기관인 원고의 보도태도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는 논평에 해당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위법할 정도로 모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 양정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판결 2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자 판결 (2004가합4722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

장판사)는 이○○(본명 : 이○○) 전 ○○ 대표이사가 일요신문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일요신문사가 2004년 6월 6일자 『처녀 갑부 이○○ △△ 대표의 과거』, 『이○○은 누구』 제하의 기사와 2004년 6월 13일자 『이○○ “사기 결혼”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아들을 전 시댁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 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도내용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것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도 등의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4722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 ○ (일명: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 우
담당변호사 최 정 환, 강 호 성,
이 도 형, 박 진 식, 김 재 용

피 고 : 1. 장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복성
2.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대표이사 신 상 철
3. 이 ○ ○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4. 감 ○ ○
서울 중구 정동 22, 14층
피고 2, 3,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박 영 주

변 론 종 결 : 2005. 7. 8.

판 결 선 고 : 2005. 8. 12.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1984년 세종대학 무용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무용을 전공하고 1994년 미국 뉴욕대에서 예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까지 10여 년 동안 발레리나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로, 2000. 5.경 온라인 게임개발 업체인 ○○을 창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2. 11.경부터는 여성 포털사이트 ○○클럽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2) 원고가 최대주주인 ○○이 2003. 5.경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 주식이 협회중개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하자, 원고는 ○○의 최대주주로서 수백억 원대의 주식평가차익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매체를 통해 발레리나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30대 독신의 여성 벤처기업가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처녀갑부’, ‘벤처 신데렐라’, ‘30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일요신문사(이하 ‘피고 일요신문사’라 한다)는 주간신문인 ‘일요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이○○은 피고 일요신문사의 편집국장, 피고 감○○은 피고 일요신문사 사회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 경위

(1) 원고는 2004. 초경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뉴욕시 부장검사가 되어 화제가 된 정○○과 결혼할 계획임을 전격 발표하여 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2004. 3. 22.경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위성방송인 KBS코리아의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지만, 정○○ 검사로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는 취지로 정○○과 결혼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세종대학교 재학 시절 임○○(1994. 1. 경 사망)을 만나 연애를 한 끝에 1986. 9.경 임○○과 혼인을 하였고, 이듬해 4.경 아들 임△△을 출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과거 결혼 및 출산 전력을 잘 알고 있던 피고 장○○은 2004. 5. 4.경 위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벤처 신데렐라 이○○ 씨가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경위

(1) 피고 감○○은 이 사건 게시물을 읽어본 후 피고 장○○을 찾아가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경위를 취재하게 되었고, 2004. 5. 27.경 피고 장○○의 소개로 임○○의 부친인 임□□을 만나 원고가 임○○과 혼인한 사실, 임○○과의 사이에 임△△이 태어났다는 사실 및 임△△의 현재 부양관계 등을 취재하였다.

(2) 피고 감○○은 2004. 5. 28.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 장○○ 및 임□□을 상대로 취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장○○을 잘 알지 못하며 자세한 대답은

이 사건 게시물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 곧 자신의 자서전이 출간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자서전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의 연락이 오지 않자, 원고에게 수 차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는 등 원고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위로 그쳤고, 2004. 5. 31. 당일 발간된 원고의 자서전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결혼한 사실이나 아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자, "처녀갑부 이○○ △△대표의 과거"라는 제목의 별지 제1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및 "이○○은 누구"라는 제목의 별지 제2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4) 피고 일요신문사의 편집국장인 피고 이○○은 편집회의를 주재하여 이 사건 제1, 2기사를 각 보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일요신문사는 2004. 6. 6.자 일요신문을 통해 이 사건 제1, 2기사를 각 보도하였다.

(5) 이 사건 제1, 2기사가 보도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기사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에 피고 갑○○은 원고의 반박 내용과 임□□의 재반박 내용을 담은 별지 제3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3기사는 2004. 6. 13.자 일요신문 제12면에 보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가 1호증의 1,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녀갑부' 등으로 유명해진 원고가 사실은 이미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전 남편인 임○○과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출산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아들을 전 시택에 맡겨 둔 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 3기사는 위와 같은 주된 내용 외에도, 전 남편인 망 임○○과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망 임○○과의 미국에서의 결혼생활, 망 임○○과 이혼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혼 후의 경과 등과 관련하여서도 임□□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예컨대 원고는 망 임○○의 기망으로 결혼을 한 후, 미국에서 합의이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기사에는 원고와 망 임○○이 뜨겁게 연애를 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하고, 이 사건 제3기사는 협의이혼 사실은 간과한 채 원고가 망 임○○과 사별한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과 이혼 경위에 관하여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내용에 부수한 정황적 사실에 불과하고 그것과 독립된 사실의 적시로서 별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와 같은 주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2.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1) 공공성

사업가의 경우 비록 자신의 업계에서 빼어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욱이 사업가의 결혼, 자식 양육 등과 같은 사생활은 일반적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사업가 중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일부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사업가의 사업활동 및 이와 관련된 사생활이 다른 어느 사업가들과는 구별되는 남다른 점이 있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거나, 사업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업활동, 사생활 등을 언론을 통해 선전·공표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의 사업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이 성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발레리나 출신으로 30대의 독신 여성이라는 자신의 특이한 경력이 특히 주목을 받아 언론매체를 통해 ‘처녀갑부’, ‘벤처 신데렐라’, ‘30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널리 알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벤처사업가로 성공한 후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수많은 언론매체들과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배경에 관한 내용, 세종대 무용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사실, 예술가로 활동한 내용, 무용학 대학교수로의 안정된 길을 버리고 벤처기업 ○○을 창업하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자신의 의, 식, 주와 취미생활 등 사생활 영역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사실, 더욱이 결혼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에 미쳐 일과 결혼했다’, ‘능력이 없어 혼자 산다’ 등으로 대답하여 자신을 미혼으로 묘사한 사실, 2004. 초경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

상형이 정○○ 검사라고 밝히고, 그 후 정○○ 검사와 결혼 계획까지 발표하여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실, 2004. 5. 31.에는 자신의 인생관, 경영관, 결혼관, 연애관, 가족관 등을 자세히 저술한 자서전을 출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많은 장벽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재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환경에서 원고가 일구어 낸 기업가로서의 성공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원고가 널리 알려졌다면 원고를 사회 저명인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서전까지 출간하고, 그 이전에 언론매체와의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의 상당 부분을 노출시켰다는 점, 언론매체의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단순히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여성기업인의 삶을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배경, 학력, 발레리나로서의 특이한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남다른 자신의 경영철학 및 기업가로서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된 것으로 설명한 점, 더욱이 원고는 30대의 독신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는데, 기자들의 결혼에 관한 질문에 우회적으로나마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대외적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생활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저명인사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한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인생관, 가족관, 사업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은 일반 독자들은 원고가 과거 결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들의 공공성은 인정된다.

(2)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발간한 자서전 서문에 임△△의 존재를 명시하는 등 과거 결혼 전력이나 아들의 존재를 감춘 사실이 없고, 한편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에게 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더구나 임□□은 임△△으로 하여금 고모를 엄마로 부르게 하고, 임△△이 원고의 집에서 생활하던 2000.경 가출하여 임□□의 집으로 갔을 때에도 임△△을 돌려 보내지 아니한 채 원고 몰래 임△△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와 임△△의 접촉을 막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원고는 아들을 양육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일 뿐, 아들의 양육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처녀갑부’, ‘미혼여성 갑부’ 등으로 소개되었고, 또한 원고 자신도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가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과거의 결혼 전력이나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음이 분명하고, 임□□이 원고가 미국유학 후 귀국한 무렵 임△△을 원고에게 곧바로 보내지 아니한 것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입이 없는 원고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임△△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1999.경 원고에게 임△△을 보내었고, 임△△이 원고의 집에서 나와 임□□의 집으로 왔을 때에도 임□□은 원고에게 임△△을 데려갈 것을 수 차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임△△을 데려가지 않았으며, 이에 임□□은 임△△의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전

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1986. 9.경 세종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 중 당시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준비 중이던 임○○과 혼인하였고, 이듬해 4.경 아들인 임△△을 출산하였다.

② 임○○은 1990.경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사회 신문사에 취직을 하였고, 원고도 곧이어 임△△을 시부모인 임□□ 등에게 맡긴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나, 미국에서의 임○○과 원고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와 임○○은 1992. 7.경 미국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③ 임○○은 1993. 말경 위암말기 진단을 받고 귀국하여 이듬해 1.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2.경 미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1995.경 귀국하였다.

④ 원고의 전 시부모인 임□□ 등은 원고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임△△을 양육하다가, 1999. 1.경 임△△을 서울 잠원동 소재 원고의 집으로 보내었는데, 임△△은 2000.경 원고로부터 성인 만화책을 본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가출하여 다시 원고의 전 시댁인 임□□의 서울 구로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⑤ 임□□은 원고에게 임△△을 다시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고, 이에 임□□은 임△△이 서울 구로동에서 서울 잠원동까지 먼 거리를 통학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임△△을 구로동 근처의 중학교로 전학시켰다.

⑥ 임□□은 2003. 3.경 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 무렵 원고가 성공한 미혼의 여성 벤처사업가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하자, 임△△의 양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8.경 원고의 남동생인 이△△을 만나 논의한 끝에 임△△을 마산에 살고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임□□은 원고가 직접 임□□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다.

⑦ 원고는 임□□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 집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임□□은 2003. 10. 4.경 재차 원고에게 직접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갈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같은 해 11. 3.경 임△△의 외할아버지에게 원고가 직접 임□□의 집을 방문하여 임△△을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 또는 임△△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⑧ 임□□은 원고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2004. 초경 원고가 정○○과 곧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2004. 3. 22.경에는 원고가 한국방송공사 위성방송인 KBS코리아의 “김동건의 한국,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임△△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4. 4. 10.경 원고에게 그동안 임△△을 양육한 데 따른 양육비, 왜곡 보도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내었다.

⑨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가 게재되고 보도된 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편 피고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중 임△△은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임□□ 등이 자신이 원고에게 가는 것을 막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가 1호증의 1, 을 나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나 제6호증, 을 나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아들을 출산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아들을 전 시대에 방치한 채 양육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과거의 결혼 전력 및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취지의 표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처녀 갑부’ 등으로 소개되어 왔고, 더구나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에 미쳐 일과 결혼했다’, ‘능력이 없어 혼자 산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미혼임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정○○과의 재혼을 앞두고 방송에 출현하여서는 ‘그동안 능력이 안 되어 가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은 그동안 미혼이었고, 따라서 혼인으로 인해 맺어진 가족도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오래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인하여 아이를 낳은 과거를 언론매체를 통해 세세히 밝힐 의무는 없고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접한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로서는 원고를 처녀 또는 미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에게 고등학생인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은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가 과거 결혼을 한 전력이 있고, 아들을 출산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감추어 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고, 다만 원고의 태도를 두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일부 표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피고들

의 원고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 내지 평가는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는 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과거의 결혼 전력 및 아들의 존재를 감추어 왔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아들을 사실상 방치하여 양육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1년 동안만 임△△을 양육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기간은 물론 지금도 원고의 전 시부모인 임□□이 임△△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을 전 시대에 맡긴 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한 것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한편 임□□이 2003. 8.경부터 원고 측에 수 차 임△△을 데려갈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 임△△을 데려가지 아니한 점, 임△△이 검찰청에 제출한 진술서(을 나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임□□ 등이 원고와 임△△의 접촉을 막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들을 사실상 방치하였다고거나 양육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내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표현 역시 그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보도내용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일부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평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 작용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의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결혼과 이혼의 전력, 결혼 생활 그리고 출산과 자식의 양육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것임에 의문이 없고, 한편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이 사건 각 기사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기사의 내용은 이미 다른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원고 스스로 공개한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제3기사는 이 사건 제1, 2기사에 대한 원고의 반박 또는 해명 내용을 임□□의 재반박 내용과 함께 보도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기사와 비교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만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어떤 보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므로,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衡量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만한 한도를 넘었는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생활 공표의 위법성은 공표된 사생활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표현 목적의 공공성),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표현 내용의 진실성), 사실을 왜곡하거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주로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표현 방법의 상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살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전 남편의 거짓말과 무능력으로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주로 전 시댁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원고가 아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은 아들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이후의 불과 1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전 시댁 부모님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회피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나 함께 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아들과 속 깊은 정을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무조건적인 모성애만을 강조하여 다른 보통의 부모와 동일한 잣대로 원고의 가족관계를 함부로 파헤치고,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원고는 전 시댁 부모님들의 진심을 오해하여 필요 이상의 감정 대립을 일삼아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전 시댁 부모님들의 경우 역시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여 원고가 손자에게, 손자가 원고에게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워야 할 것인데, 오히려 원고에 대한 불신과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인해 원고와 손자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이 원고와 전 시댁 부모들 사이의 대화부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는바,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불행했던 과거사 그리고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재의 왜곡된 가족관계가 일일이 외부에 밝혀지는 것은 원고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고, 일반 독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특수한 개인사를 속속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자신의 경영관, 인생관, 결혼관, 가족관 등이 이미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사회 저명인사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가 된 경위, 언론매체들과 행한 원고의 인터뷰 내용, 그로 인해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한 일반 대중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 언론매체, 자서전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 중 밝고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홍보하여 더욱 유명해진 사정이 엿보이는바, 비록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보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의 사생활 침해에 비해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원고가 임의로 공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다른 내용의 정보에 관하여도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상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주된 내용 중 원고가 과거 결혼한 전력이 있고, 사망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으며, 아들은

현재 전 시택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의 표현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도 보건대, 원고를 미혼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목적으로 원고의 과거 결혼 경력과 아들이 존재함을 전 시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밝히고,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고의 전 남편과의 혼인 경위, 미국 유학 생활 중의 혼인생활, 전 남편의 사망 경위, 귀국 후의 아들의 부양관계 등을 적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달리 흥미본위의 품위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게시물 및 이 사건 제1기사는 피고들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된 내용을 상당한 방법으로 게재 또는 보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게시물 및 각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것은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의 것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보도 등의 목적의 공공성, 내용의 진실성, 표현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해 섭
판사 이 봉 수
판사 황 인 경

□

판결 3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9.자 판결 (2005카기517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경인방송(ITV)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난 2005년 4월 18일 방송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의 '미디어 이슈' 코너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법인이 여전히 존속중임에도 불구하고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

막을 표시하여 진실을 왜곡했고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토론자들이 “2004년 12월 31일 폐업을 단행한 신청인이 불과 4개월 만인 2005년 4월 1일 영업을 재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은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자막을 화면에 표시한 사실은 맞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iTV 법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TV 사업권이 없고, TV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등 신청인의 법인이 존속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2005년 1월 1일자로 ‘iTV’의 방송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막 중 ‘iTV가 없어진 것’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iTV’의 방송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자막의 취지를 신청인 법인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이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발언에 대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신청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으로서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신청인의 2004년 12월 31일자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카기5171 반론보도심판

신 청 인 : 주식회사 경인방송

인천 남구 학익동 587-46

대표이사 이 춘 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길

담당변호사 김 옥 신, 양 중 관

피 신 청 인 :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대표자 사장 권 영 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변 론 종 결 : 2005. 7. 15.

판 결 선 고 : 2005. 7. 29.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주 월요일 23:40

부터 화요일 00:30 사이에 방송되는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반론보도문 내용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일백만 (1,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주 월요일 23:40부터 화요일 00:30 사이에 방송되는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반론보도문 내용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1일 금 이백만(2,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방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7. 1. 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인천, 경기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한 지상파 TV 채널 'iTV', FM 라디오 채널 'iFM'을 각 운영하여 왔는데, 2004. 12. 2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2005. 1. 1.부터 TV 채널인 'iTV'의 방송 중단이 예정되자, 2004. 12. 31.자로 폐업을 단행하여 'iTV'와 'iFM'의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에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으나, 그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5. 4. 1.자로 영업을 재개하여 아직 방송허가 기간이 남아 있는 FM 라디오 채널인 'iFM'의 방송을 다시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신청인은 2005. 4. 18. 방송된 '미디어 바로보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미디어 이슈' 코너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iTV'의 방송 중단 이후 경인 지역의 새로운 방송 설립 움직임을 보도하였는바, 그 보도 과정에서, ① 시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표시하였고(이하 '보도사실 ①'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토론자들은 2004. 12. 31. 폐업을 단행한 신청인이 불과 4개월 만인 2005. 4. 1. 영업을 재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2004. 12. 31.자 폐업은 신청인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보도사실 ②'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비록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iTV'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신청인 법인은 여전히 존속 중에 있고, 디지털 TV 방송과 FM 라디오 방송은 아직 그 허가 기간이 남아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그 당부를 다투고 있는 만큼, 피신청인의 보도사실 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의 2004. 12. 31.자 폐업 결정은 'iTV'의 방송 중단으로 인해 신청인의 주 수입원인 광고 영업이 중단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위장 폐업 의혹을 제기한 보도사실 ②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지 2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도사실 ①의 내용은 신청인 법인이 소멸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상파 TV 채널인 'iTV'의 방송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도사실 ②는 신청인의 폐업 및 영업 재개의 경위를 살펴볼 때, 위장폐업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 'iTV'의 방송 중단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역방송의 설립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상 이 부분 보도는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을 결하였다고 다룬다.

나. 판 단

(1) 보도사실 ①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도중 "iTV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자막을 화면에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상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행자 및 토론자들이 그 진행 도중 수차례에 걸쳐 "최근 폐업을 선언했던 경인방송 법인이 라디오 방송을 재개하였다", "iTV 법인이 남아 있긴 하지만 TV 사업권이 없고, TV 방송을 할 수 없다", "돌발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했던 iTV 법인이 다시 사업재개를 했다"고 발언한 점, ㉡ 신청인은 방송사업자로서 지상파 TV 채널인 'iTV' 이외에 FM 라디오 채널인 'iFM'도 함께 운영하여 왔던 점, ㉢ 2004. 12. 21.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결정으로 인해 2005. 1. 1.자로 'iTV'의 방송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막 중 'iTV가 없어진 것'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2004. 12. 21.자 방송위원회 결정에 의해 신청인이 운영하던 방송 채널 중 하나인 'iTV'의 방송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 수 차례 걸쳐 신청인 법인이 존속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점을 고려할 때, 위 자막의 취지를 신청인 법인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자막의 내용이 신청인 법인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오인한데서 비롯된 보도사실 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2) 보도사실 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사실 ②의 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으로서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폐업 및 영업 재개 경위를 살펴볼 때,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크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상 위장 폐업인지 여부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 청구는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 보도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2004. 12. 31.자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한 이익의 존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기록상 소명되는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반부에서 신청인의 폐업이 위장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가 단순히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반론보도문의 범위 등

결국,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보도 내용과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하고, 그 보

도 방법은 TV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기로 하며, 아울러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주문 제2항의 간접강제명령을 함께 발령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 2항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태 운
판사 전 휴 재
판사 이 효 제

〈별 지1〉 반론보도문

본 프로그램의 2005년 4월 18일 방송 내용에 대하

여 주식회사 경인방송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반론 보도 판결이 있어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방송 도중 진행자와 토론자는 작년 말 경인방송의 폐업은 경인방송의 경영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방송의 폐업결정은 방송위원회의 TV 재허가 추천 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려진 조치일 뿐 위장 폐업을 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 경인방송은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이는 회사의 직원, 주주 그리고 회사의 채권자들과 시민들이 현재 허가기간이 남은 FM 방송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기를 강력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주식회사 경인방송의 반론 내용이었습니다. □

판결 4

사생활 침해에 있어 수인해야 할 범위가 큰 공인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진실성이나 진실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자 판결 (2004가합8252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선흠 부장판사)는 유명 연예인 전지현(본명 : 왕지현)과 그녀의 소속 매니지먼트사 (주)○○○(대표 정○○)가

뉴시스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뉴시스와 소속기자 민○○은 각자 3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고 최해운이 대표이사로 있는 뉴시스와 소속기자 피고 민○○이 지난 2004년 9월 29일자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 왕지현이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 이를 뉴시스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입었고 이 기사로 원고는 물론 원고가 소속된 회사의 명예도 훼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자 ‘스타’로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원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원고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 보도해야 함에도 피고 민○○은 특별히 원고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민○○은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민○○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피고

최해운이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4가합82527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왕 지 현(예명 : 전 지 현)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 ○

원고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8

삼보빌딩 1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우

담당변호사 표 종 록

Ⅱ 고 : 1.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51-8

대표이사 최 해 운

2. 최 해 운

3. 민 ○ ○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서원빌딩 7층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일

담당변호사 임 홍 중, 정 성 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 상 현

변 론 종 결 : 2005. 6. 22

판 결 선 고 : 2005. 7. 6.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민○○은 각자

원고 왕지현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왕지현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왕지현과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 민○○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왕지현이, 나머지 1/2은 위 피고들이, 원고 왕지현과 피고 최해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왕지현이,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왕지현에게 7억 원,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왕지현은 ‘엽기적인 그녀’, ‘내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등에 출연하였고, 광고모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며, 원고 회사(원래 상호는 ○○○○○○○○였으나 2004. 8. 2.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원고 왕지현에 대한 매니지먼트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뉴시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

여 피고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newsis.com)에 기사를 게재하면 그와 동시에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등에 자동적으로 기사가 전송되는 형태로 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기사제휴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피고 최해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민○○은 피고 회사 연예부 소속의 기자로 아래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2004. 9. 29.자 기사

피고 회사는 2004. 9. 29. 제목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 하에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영화배우 전지현(24)이 올 11월 결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지현 측근에 따르면 “전지현은 자신의 소속사인 ○○○○ ○○의 사장 정○○(37)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일정을 잡았으나 정씨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씨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일정을 다시 잡아 결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혼은 전지현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결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지현은 신랑 후보자인 정○○ 씨에게 중학교 재학 시절 발탁되어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오늘날 톱스타로 성장했다. 특히 전지현의 결혼은 톱스타의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지만 배우자가 소속사 사장이란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7년 패션지 ‘에폴’의 모델로 데뷔한 전지현은 프린터 CF에서 테크노 댄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 또 지난 1999년 ‘화이트 발렌타인’으로 영화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전지현은 이후 ‘시월애’(2000년), ‘엽기적인 그녀’(2001년), ‘4인용 식탁’(2003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2004년)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연예계는 김정수-신은경 커플에 이어 또 한 쌍의 톱스타와 매니지먼트

트사 사장의 결혼이 성사될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is.com)에 게재하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kr.yahoo.com) 등에 전송하여 게재되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의 기사임에도 피고들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원고 왕지현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바 없이 보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명예가 훼손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자 인터넷상에는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원고 왕지현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이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인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도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되었다.

(3) 나아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의 광고모델로서의 활동 등 연예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어 원고 왕지현 및 원고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의 결혼 여부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 대중의 중대한 관심사에 관한 것임은 물론 원고 왕지현의 결혼에 관련된 사실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었던

것이고, 피고 민○○이 그에 관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연예인 매니저 등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또 2004년 8월말 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왕지현의 결혼 상대방으로 보도된 정○○과 친분관계에 있던 ○○기획 주식회사 대표인 김○○로부터 “전지현이 소속사인 당시 ○○○○ ○○의 사장 정○○과 결혼하기로 했으나 정○○의 개인사정 때문에 연기되었고, 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일정을 다시 잡아 결혼한다는 것” 등의 얘기를 들은 후에 기사화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그러한 법적 이익을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라 한다)이다.

한편, 언론 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보도할 필요가 있는 등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상의 또 다른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이익형량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프라이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란 언론 기관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위 대법원 96다11327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언론 보도라도 그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론 기관이 그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지현이 ‘2004년 11월경에 소속사 사장과 결혼할 것’이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에서 ‘원고 왕지현의 측근’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 왕지현이 ‘2004년 11월 경 결혼 예정이었는데, 상대방인 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한편 그와 같은 결혼 일정은 원고 왕지현 측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왕지현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바와 같은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기사에 위법성이 없는지는 뒤에 서 판단한다).

(3) 한편, 원고 왕지현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최해운에 대하여, 피고 최해운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401조에 근거하여 피고 최해운도 다른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최해운이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피고 최해운에게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 최해운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이외에 더 나아가 그에게 이 사건 기사의 작성·보도와 관련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왕지현의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의 여부

(1)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이므로, 어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려면 그 보도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 왕지현의 결혼 상대방이 그녀의 소속 매니지먼트사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정○○이 원고 왕지현을 발탁하여 이른바 ‘스타’로 키웠고, 원고 왕지현의 결혼은 ‘톱스타’인 그녀의 결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과의 결혼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적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왕지현이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결혼 상대방인 정○○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 외에는 원고 회사에 관하여는 별다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고 있고, 그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것은 원고 왕지현의 결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미혼의 유명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함에 따라 ‘인기’가 종전에 비해 떨어진다거나,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일부 독자들이 그 연령대나 연예분야에의 관심 정도, 원고 왕지현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정도 등에 따라, 청순한 이미지를 가진 원고 왕지현이 그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사장과 결혼한다는 사실과 그 내막 등에 대한 막연한 추측 등으로 갑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 왕지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으나, 비록 미혼의 여자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여부에 관련된 사실적시’만으로 그 대상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 회사의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직접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 왕지현의 소속사이자 정○○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 회사, 피고 민○○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

원고 왕지현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으로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로 이른바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왕지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의 경우 미혼의 유명 여자 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의 결혼 예정 사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반인들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기사 내용의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을제4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 왕지현이 2004년 11월 경 또는 그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과 결혼할 예정이었거나 예정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4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1 내지 7,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왕지현의 결혼 예정 여부에 관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할 정도로 신빙성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신속한 보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원고 왕지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등을 한 다음에야 보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민○○은 특별히 원고 왕지현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취재 없이, 단지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로부터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을 들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른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제7호증(검사 작성의 피고 민○○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소문이 퍼져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도 언론 기관인 이상 막연히 이를 기사로서 보도해버리면 단순히 연예계 내부 등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문’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인터넷 언론의 광역성, 유포의 신속성 및 편의성 등의 특성상 한번 잘못된 보도를 하면 그 오보를 돌리기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민○○ 및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민○○은 원고 왕지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이 사건 기사의 직접 작성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민○○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왕지현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 피고 민○○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 왕지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특별히 제약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가 원고 왕지현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히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미혼의 유명 여성연예인인 원고 왕지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사생활에 관하여는 일반인들에 비하여는 더 넓은 범위에서 수인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사 내용, 원고 왕지현과 피고 회사의 지위, 이 사건 기사에서의 표현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 왕지현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왕지현의 광고모델 등으로서의 활동 등에 지장을 미칠 것이 명백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 외에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왕지현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 결

결국 피고 회사, 피고 민○○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왕지현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불법행위일)인 2004. 9. 29.부터 원고 왕지현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04. 11. 17.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왕지현의 피고 회사 및 피고 민○○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왕지현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최해운에 대한 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선 흠
판사 강 재 원
판사 김 윤 정 □